3. 장학금 지급 규정 신구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비고
제 8 조(장학금의 종류 및 장학생 선발방법) 본 대학 장학금의	제 8 조(장학금의 종류 및 장학생 선발방법) 본 대학 장학금의	
종류 및 장학금의 종류별 선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종류 및 장학금의 종류별 선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기 승인사항 반영
1. 교내장학금	1. 교내장학금	- 현재 1인 근로시간이
가. ~ 다. (생략)	가. ~ 다. (현행유지)	50 시간이 초과함에 따라
라. 근로장학금	라. 근로장학금	시간근로장학금을 50 시간
1) 학기근로장학금: (생략)	1) 학기근로장학금: (현행유지)	내외로 운영하도록 변경
2) 시간근로장학금: 근로소요 발생 시 희망자 신청을 받아	2) 시간근로장학금: 근로소요 발생 시 희망자 신청을 받아	(학생지원팀-172)
<u>월 50 시간 이내의</u> 근로의무를 부과하고 근로의무	<u>월 50 시간 내외의</u> 근로의무를 부과하고 근로의무	- 이미 특별장학금 선발시
완수 시 일정액의 장학금을 지급한다.(이하생략)	완수 시 일정액의 장학금을 지급한다.(이하 현행유지)	장애여부를 우대사항으로
3) ~ 7) (생략)	3) ~ 7) (현행유지)	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이를
마. 기부장학금: (생략)	마. 기부장학금: (현행유지)	반영(학생지원팀-879)
바. 특별장학금: 갑작스런 가정경제 여건의 약화 등 인정할	바. 특별장학금: 장애학생, 학생활동 봉사 학생 및 갑작스런	- 학생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
만한 긴급 사유가 있는 학생에게 학생처장은 특별장학금을	가정경제 여건의 약화 등 인정할 만한 긴급 사유가 있는	현재 간부장학금 제도를
지급할 수 있다. 단, 선발절차와 장학금액은 별도로 정한다.	학생에게 학생처장은 특별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단,	운영중임(학생지원팀-582)
	선발절차와 장학금액은 별도로 정한다.	